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101-15

www.mois.go.kr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CONTENTS

Ⅰ 지방자치 개요 01

Ⅱ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11

1. 지방의회의 구성 12
2. 지방의회의 역할 16
3. 지방의회의 운영 43

Ⅲ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47

1. 지위 및 신분변동 48
2. 지방의원의 권한 52
3. 지방의원의 의무 57

Ⅳ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61

1. 지역주민 62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70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74

Ⅴ 지방의원 관련 비위사례 및 유의사항 81

Ⅵ 부록 91

1. 참고자료 및 정보 92
2. 주요 용어 정리 94
3.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의 주요 행위기준 98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I

지방자치 개요

I. 지방자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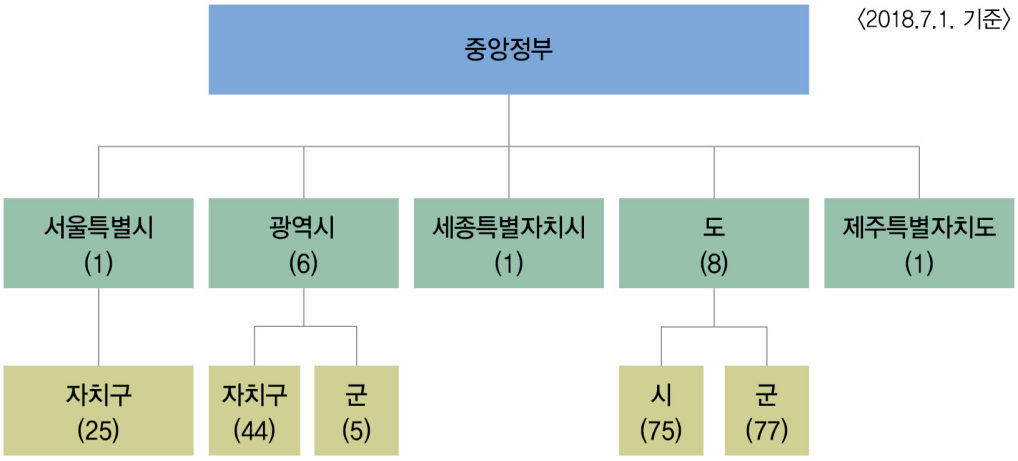
01 지방자치 개요

0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17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226개의 시·군·자치구가 있음**

»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규정

〈2018.7.1. 기준〉



※ 세종특별자치시('12년 출범), 제주특별자치도('06년 출범)는 1계층 구조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예술의 진흥, 지역 민방위 및 소방,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함**

» 시·도는 종합계획 수립·조정·지도 등 수행

» 시·군·자치구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 등 수행

⚙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도시계획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적측량검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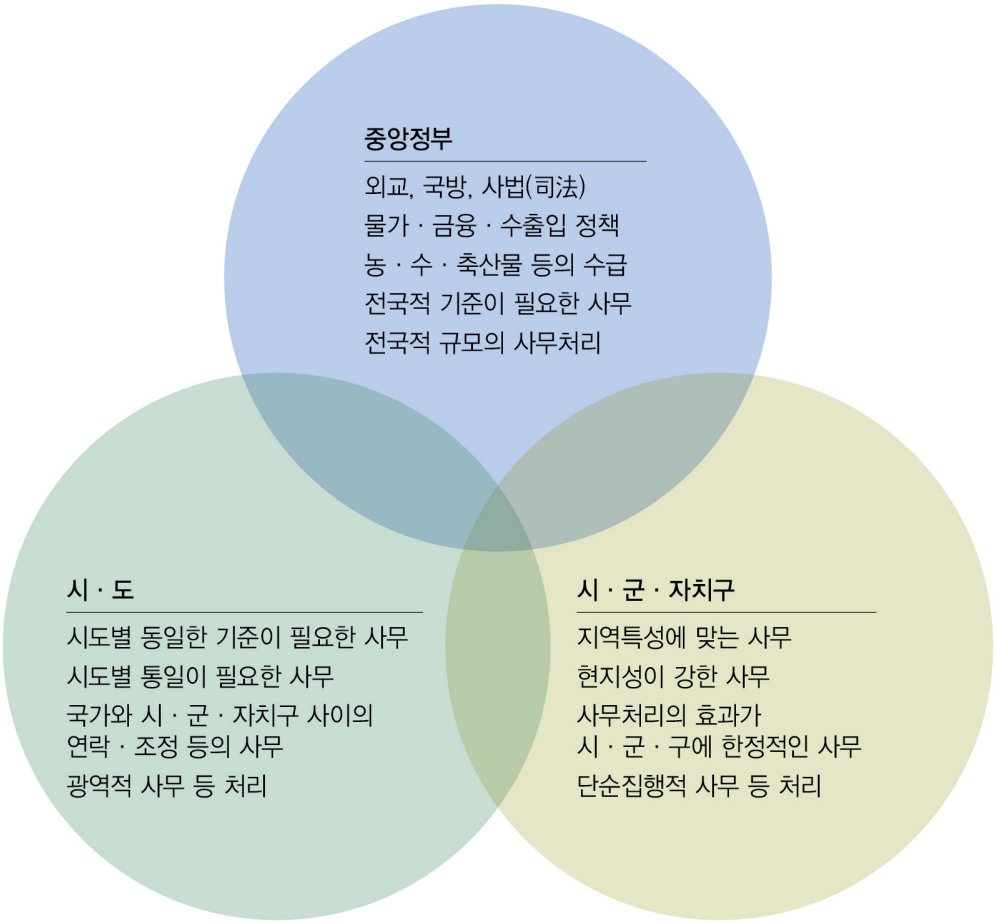
»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 사무의 일부는 특·광역시가 처리할 수 있음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상·하수도 설치·관리 등

☞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세부 기준은 〈참고1〉 참조

⚙ **국가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물가정책, 금융정책 등 통일적이고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처리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
-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시·도 2명, 시·군·구 1명)을 선거로 선출(임기 2년)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조례안, 예산안, 결산 등 주요안건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및 방침을 결정함
  -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승인, 기금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통제함
  -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로 집행기관 견제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자치단체 사무를 집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 국가위임 사무의 관리·집행, 소속 직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및 지휘·감독을 하고 있음
  -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 제정 권한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할 부단체장 임명(제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설치 가능함

    ※ 시·도에 교육·학예에 관한 별도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이 있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에는 관여 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함**
  -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 및 통제하고 있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주요 권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 의안의 발의(법 §66) • 의결(법 §39) – 조례의 제정·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부과·징수 – 예산외 의무부담 등	•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법 §101) • 의안의 제출(법 §66) • 사무의 관리 및 집행(법 §103) • 예산안의 편성·제출(법 §127) •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법 §131) • 임시회의 요구(법 §45) • 위원회 개회 요구(법 §61)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 행정사무감사·조사(법 §41) • 서류의 제출요구(법 §40, §41④) • 청원의 심사와 처리(법 §75) • 의회사무직원의 임명 추천(법 §91) • 선결처분의 사후 승인(법 §109)	• 의회사무직원의 임명(법 §91) • 조례안의 재의요구(법 §26) • 선결처분(법 §109)

03 지방 재정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한 행정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함
- **지방재정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일반재정과 교육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교육재정으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고 중앙정부의 재정구조와 유사함**
  - »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임
  -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등을 위해 별도로 설치됨
- **지방교육재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해 일반재정과 구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됨**
- **지방재정 규모는 210.7조원('18년 기준)으로 국가 재정의 34.7%에 해당됨**
  - » 사회복지 27.1%, 인력운영비 13.3%, 환경보호 9.9%, 수송 및 교통 8.7% 등 순으로 지출

0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으로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영 제4조) 범위 한도 내에서 직급과 직렬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05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됨**
  -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눔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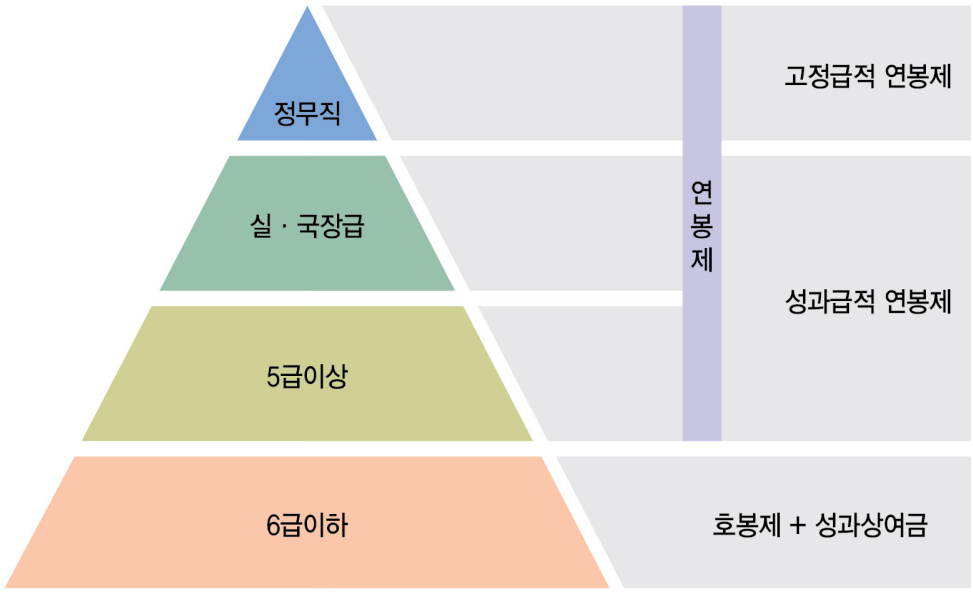
지방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 등), 기술(공업·농업·녹지 등), 연구·지도직 공무원
- **특정직** : 공립대학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지방소방공무원
- **정무직** :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원, 기타 법령·조례 지정 공무원
- **별정직** : 비서·비서관, 시·도 정무부지사, 의회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휴직·면직과 징계 등의 권한(임용권)을 가짐**
  - 소속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 위임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보수는 봉급(연봉)과 수당으로 구분되며, 6급 이하는 호봉제(봉급), 5급 이상은 연봉제를 적용함

»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35종의 수당 및 4종의 실비보상 지급



참고1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세부 기준

국가사무(제11조)

-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 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 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주민복지, 노인, 전염병, 청소 등)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사무(농업용수시설, 중소기업 육성 등)
-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유아원, 도서관, 지방문화재 등)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제10조)

시·도사무(제10조)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제10조)

- 시·도가 처리하는 것 이외의 사무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도의 사무 중 일부 직접처리

참고2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도

헌 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 개별 법령이 있는 조문 기준

총 강	관할구역 (§4①) 사무·기능	■ 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등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 민	투 표 (§14②)	■ 주민투표법	
	소 환 (§20②)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선 거	단체장·의원(§29)	■ 공직선거법	의 회: 조직·의원·권한·회의 등(§30~92)
집행기관	기구·정원 (§112⑤)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112④)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정당법(정당가입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정치활동 금지 등)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연구 · 지도직 공무원 임용규정, 지방자치 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규정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징계 · 소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교육 (§121②)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재 무	지방재정 (§145)	■ 지방재정법 '06.1.1 분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 (§146②)	■ 지방공기업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135)	■ 지방세법 '11.1.1 분법	
국가 지도·감독	감사 (§171조의2③)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특 례	서울 (§174①)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주 (§174②)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 (§174②)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Ⅱ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1. 지방의회의 구성　2. 지방의회의 역할　3. 지방의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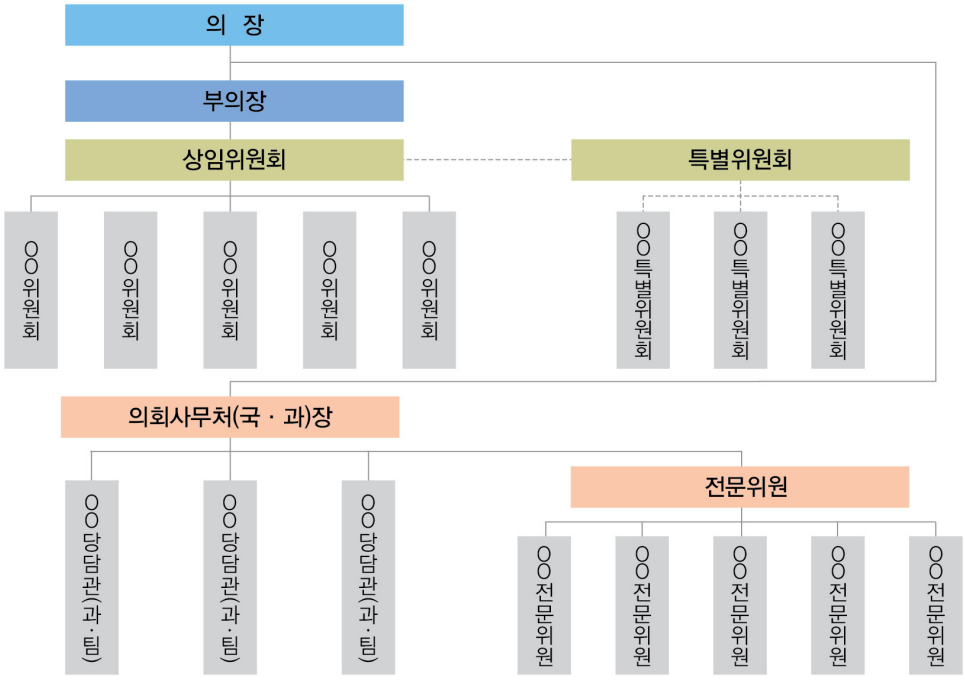
II.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01

지방의회의 구성

01 의회의 구조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구성됨**
  - » 의장,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함
-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음
- **지방의회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회의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고 있음**
  - » 시·도의회는 사무처를 두고 시·군·구의회는 사무국(과)을 두고 있음



02 의장·부의장

- 시·도의회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잔임 기간임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 의장 또는 부의장의 사임은 의장이나 부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 그 사임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역할)

❖ 의회의 대표자 및 회의의 주재자로서 의장의 주요 권한은
- ① 의회 대표, ② 의사 정리, ③ 질서 유지, ④ 사무 감독 등으로 구분

❖ 기타 권한으로는
- ① 의원이 제출한 5일 이내 청가의 허가, ② 폐회기간 중 위원장 사임의 허가, ③ 폐회기간 중 의원 사직의 허가, ④ 확정된 조례안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 할 때 공포, ⑤ 위원회에 출석과 발언 등이 있음

03 위원회

01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의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이를 사전심사하기 위한 상설화된 위원회를 말함
  -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역할은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상임위원회의 종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 기초의회 : (종전) 의원 13인 이상 상임위 설치 → (현재) 조례로 자율화('06.4 개정)

-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됨**

교육·학예 관련 상임위(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로 구체적인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교육위원회)이 '14.6.30.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위 의무화가 폐지되고,「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함

02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임**

  »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됨

  ※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지방자치법」위반

-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안의 내용에서 결정됨**

  » 특별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 개의 특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방의원 1인이 2개 이상의 특별위원회 위원도 가능함

04 사무기구

⚙ **지방의회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있음**

※ 의회사무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는 구별

⚙ **시·도의회는 사무처를 두고 시·군·자치구의회는 사무국(과)를 둠**

» 사무처(국·과)장은 의회사무의 전결권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 대표권은 의장을 통해서만 행사함

» 사무처(국·과)장의 보좌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규모나 재정형편 등에 따라 각각 조례로써 다양하게 구성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

의회사무기구명	설 치 대 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3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별표3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며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 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회사무국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의회사무직원은 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함**

» 의회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므로「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음

II.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02

지방의회의 역할

01 개 요

⚙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두고 있음**

» 지방의회는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의 심사·처리 등의 권한이 있음**

» 「지방자치법」 이외의 개별법령에서도 지방세 감면 의결, 도시계획 수립·변경의 의견제시 등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상 권한 및 개별법령상 권한은 〈참고〉 참조

⚙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함**

»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을 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임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 (2009추53 판결)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와 상호작용을 하며, 각 주체별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

지방의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협조 및 견제 관계 유지
	주 민	■ 주민을 대표,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
	중앙정부	■ 지방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조화
	他지방의회	■ 선의의 경쟁 및 협조 관계 유지

참고 지방의회의 권한

■ 「지방자치법」상 권한

○ **일반적 의결사항(법 제39조①항)**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개별적 의결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제4조②항)
-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신설(제6조②항)
- 서류제출 요구(제40조)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발동(제41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의 승인(제109조)
- 보증채무 부담행위(제124조), 계속비(제128조)
- 예비비 지출의 승인(제129조)
- 행정협의회 설립규약의 변경·폐지(제152조②항 및 제158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변경 및 해산(제159조①항 및 제164조)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법 제39조②항)**

■ 개별 법령상 권한(예시)

○ 의 결

권 한 내 용	법 령 명	비고
재산세 도시지역 지정	「지방세법」(112조①)	의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4조)	의결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의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11조)	의결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변경사항	「지방재정법」(13조)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지방재정법」(18조②)	의결
계속비사업	「지방재정법」(42조)	의결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44조①)	의결
세출예산의 장·관·항 사이의 상호이용	「지방재정법」(47조①)	의결
세출예산의 명시이월	「지방재정법」(50조①)	의결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지방재정법」(55조의4)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①)	의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8조②)	의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1조②)	의결
지방공기업 예산안의 의결	「지방공기업법」(26조①)	의결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재산 취득·처분	「지방공기업법」(40조①)	의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지방공기업법」(54조②)	의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65조의3)	의결
출자법인의 지분율 변동 행위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8조②)	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및 개축	「유료도로법」(5조)	의결

○ 동의

권 한 내 용	법 령 명	비고
국가의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8조)	
천재·지변 입은 주민에 대한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4조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9조①)	

○ 승인

권 한 내 용	법 령 명	비고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공기업법」(19조②)	
지방직영기업의 결산	「지방공기업법」(35조③)	
개발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감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7조④)	

○ 의견청취

권 한 내 용	법 령 명	비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15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설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11조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5조②)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6조①)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7조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13조②)	
금융중심지의 지정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4조)	

○ 보고

권 한 내 용	법 령 명	비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48조③)	

02 조례의 제·개정

01 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법령의 범위 안

»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효력이 없음

조례 제정이 법령 위반 등에 관한 판례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의 규정취지, 목적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2008추32 판결)

❖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이 법령에 없는 경우 급부행정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경우라면 조례 제정이 가능(2007추42 판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 포함)를 처리하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당해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례

❖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묘지 등의 허가는 도의 사무이고 시·군에서 그 사무를 규율하는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95추35 판결)

»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법령에서 위임이 있는 경우 제정 가능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제정한 조례안 사례

❖ **(조례명) ○○광역시 미군부대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조례안**
- (판결요지) 이 조례안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인 미군부대이전은 원고가 그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2002추23판결)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이나 벌칙 규정 시 법률의 위임

»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법률의 위임없이 의무부과 및 벌칙을 제정한 사례

❖ **(조례명)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의 위임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에 심의할 안건과 그 회의결과를 사전·사후에 보고" 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법(93추144판결)

❖ **(조례명) ○○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
- (판결요지)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등 연령제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율를 제한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2007추134판결)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와 배분 원칙

» 조례의 규율범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서로 분립하여 각각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됨

권한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 **(조례명) ○○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
- (판결요지) 시의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시장의 인사권에 사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2007추158판결)

02 절차

조례는 ① 조례안의 발의, ② 입법예고, ③ 심의·의결, ④ 이송 및 보고, ⑤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개정됨

조례안 발의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함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에서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입법예고 후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함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조례·규칙은 20일 이상으로 종전과 같음

심의·의결

»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침

» 지방의회는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예고할 수 있음

※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심사 전 예고 하는 것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바람직

» 조례안 본회의 심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서 제출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송

» 지방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함

※ 조례는 이송된 날부터 5일이내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함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함

»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이송된 조례를 지체 없이(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함

»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 조례안 제·개정 절차 〉

의안 제출 · 제안 · 발의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출
- ■ 위원회 제안
-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발의

입법예고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
- ※ 필요시 심의 · 의결 前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조례안예고를 할 수 있음

심의 · 의결
-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토론 → 의결
-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함

이송 · 보고
- ■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 시 · 군 · 구청장 → 시 · 도지사 보고,
  시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또는 **재의요구**

본회의 처리 및 지방자치단체 이송

- ■ 이송된 후 5일 이내 단체장 공포
-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대법원 제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03 재의요구 및 제소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음

구 분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상급기관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07·108조	▸「지방자치법」 제172조
재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07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 포함, 의무적 부담 경비와 응급복구비를 삭감하는 경우(제108조)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이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장	▸좌 동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재의 요구기간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의 회부기간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이내 (영 제71조)	▸좌 동	▸규정 없음
일부·수정 재의 요구	▸불 허	▸불 허(시행령 제71조)	▸규정 없음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좌 동	▸좌 동
대법원 제소	▸규정 없음 * 판례는 인정 (99추23 판결)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 제소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이 제소지시 또는 직접 제소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 신청 가능	▸좌 동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사례

〈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내용 위반 〉

○ (조례명) ○○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12.7.9)

– (이유 및 판결요지) 시우회 등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유 중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규정한 조례안은 무효

○ (조례명) ○○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11.2.23)

– (이유 및 판결요지) 지방의원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인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 것으로 위법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

○ (조례명) ○○시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운영 조례('07.10.8)

– (이유 및 판결요지) 동 조례안 제10조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은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위배하여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벌칙 규정 〉

○ (조례명) ○○시 ○○구 영유아 보육 조례('07.9.12)

– (이유 및 판결요지)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을 정한 조례안 제17조제3항은 법률의 위임없이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및 대표제 원리 위반 〉

○ (조례명) ○○시 ○○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0.10.15)

– (이유 및 판결요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미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

04 조례 제·개정 관련 지방의원의 역할

⚙ 지방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지방자치법」제66조는 지방의원, 지방의회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안 발의과정 〉

구 분	지방의원이 해야 할 사항
정책/사업 문제파악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 파악
조례 제·개정 대상여부 검토	조례 제정 대상이 당해 지자체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에 조례안 발의가능
자료수집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자료수집(현황, 통계, 입법례, 관계법령 등)
조례안 요강 작성 및 검토	조례안 요강작성(설계)
	법령위배 여부 검토
	집행기관(공무원)과 협의
	이해 관계인/단체의 의견수렴 및 조정
조례안 초안 작성	초안작성 및 재검토
	집행기관 또는 전문가 협의

▼

지방의회에 발의

조례 제정으로 확대 시행된 주요 정책사례

❖ 청주시가 최초로 제정한「행정정보공개조례」('92.1)는 전국적인 정보공개 조례 제정의 확산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96.12) 제정의 계기가 됨

❖ 부천시「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92.7.26)는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금지규정 개정과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함

❖ 경남도에서는 조례로 진주의료원을 해산('13.9.25)한 바 있음

⚙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에 대해 심의함

»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조문화 한 것이므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과 사업 내용의 문제와 이를 집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 해야 함

»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은 신중하고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파악해야 함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혹은 유사 조례를 활용하여 심사시 활용

» 조례를 시행할 때 새로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 재원의 종류, 국고 및 시·도 보조금 지원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함

»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규 이므로 주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주민·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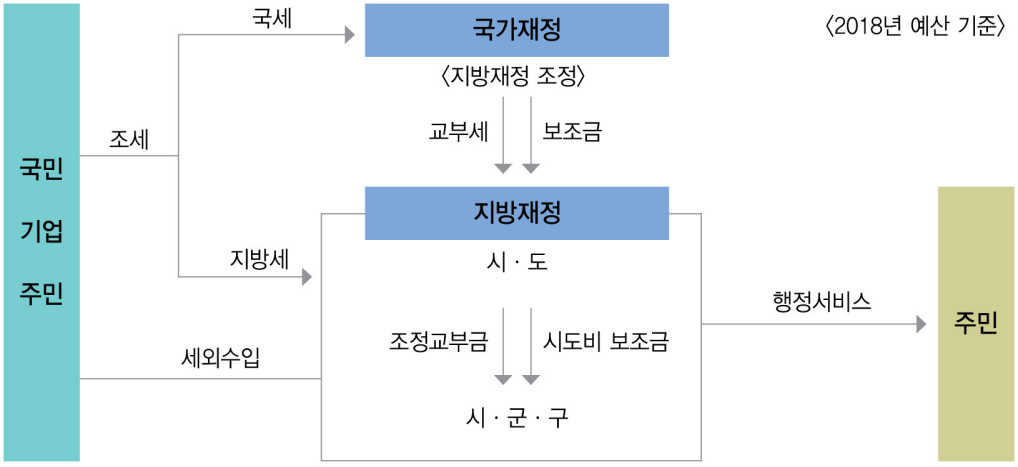
조례안 심사 시 주요 확인사항

❖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사유 및 효과성 등을 검토**
❖ **법령 및 상위조례 위배 여부**
❖ **주민, 지역 및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판단**
  – 주민의 경제적 부담 여부
  – 주민 상호간 및 지역 간 형평성 여부
  – 집행기관의 의견 참고
❖ **조례에 포함된 행정 절차 및 규제의 과다 여부 확인**
❖ **단체장의 재량권, 예외규정(단서규정),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 확인**
❖ **조례시행 시 예상되는 다양한 파급효과 등을 검토**

03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01 지방재정 개요

■ 지방재정 구조



⚙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임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할 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됨(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2.28)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상세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참조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11개 세목으로 구성됨**

» 도세(6개) vs. 시·군세(5개) / 특·광역시세(9개) vs. 자치구세(2개)

☞ 지방세 과목구조는 〈참고1, P37〉 참조

⚙ **지방세외수입은 수수료, 임대수입 등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수입임**

» 지방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구분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0:20으로 지방세가 전체 조세의 20% 수준임

02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국가→지방)

⚙ **지방교부세**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 재원으로 교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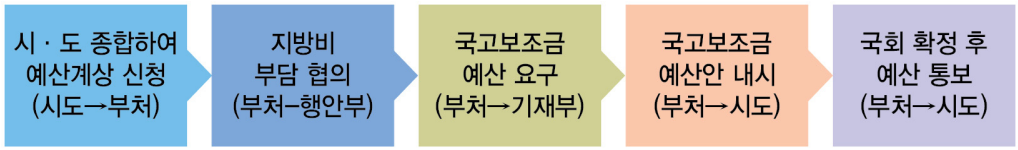
※ 재원 규모 : 내국세 19.24% + 종합부동산세 전액 + 담배분 개별소비세 20%

» 종류 : 보통교부세(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 특별교부세(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대응), 소방안전교부세(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전액)

⚙ **국고보조금**

» 국가위임사무,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교부함

»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국고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함(「보조금법시행령」상 기준보조율 적용)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Matching) 비율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해짐

〈 보조금 지급대상 주요사업 매칭 비율 〉

기준보조율	사업성격	주 요 사 업
100%	국가위임사업	일반여권발급(100%), 가족관계등록사무(100%)
80~70%	국가시책사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70%), 해양 보호구역관리(70%), 농촌용수개발(80%), 농어업기반정비(80%), 생태하천복원사업(70%), 산림경영자원 육성(70%), 특수상황지역개발(80%), 사회적기업 육성(70%)
50~40%	국가이해 우선사업	산불방지대책(40%), 농산물 유통개선(40%)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40%), 취약·위기가족지원(50%), 재해위험지역정비(50%),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50%), 생활공해관리(50%), 해양 및 수자원 관리(50%)
30~15%	지방이해 우선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30%), 낚시사고 선진화(30%), 과수 생산유통지원(30%), 체육진흥시설 지원(30%)

■ 조정교부금

⚙ 시·군 조정교부금 (광역시·도 → 시·군)

»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를 시·군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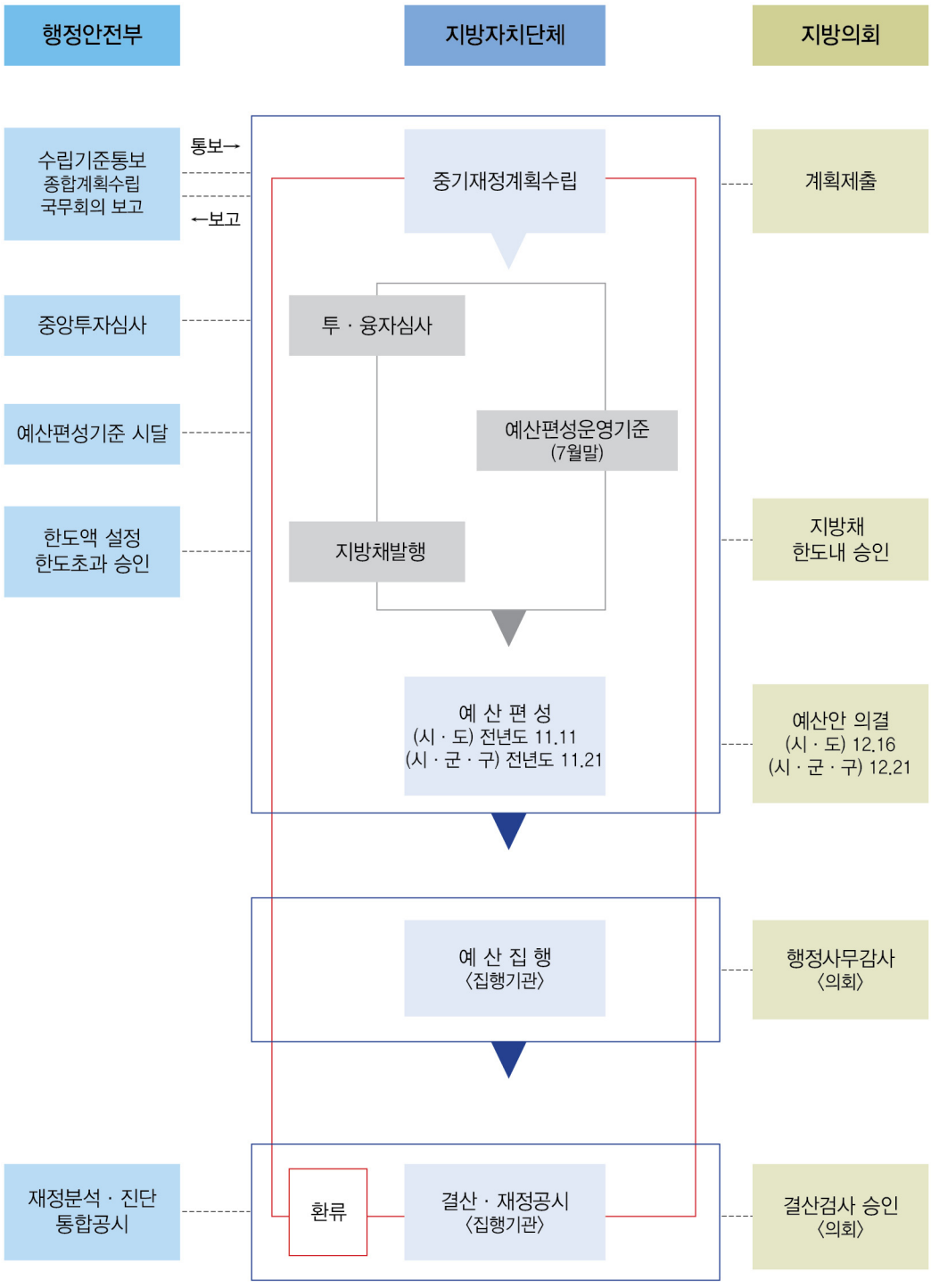
*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47%

⚙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광역시 → 자치구)

» 특·광역시에서 관할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해 시세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로 배분하는 제도

* 특·광역시 보통세의 일정률로 조례에 규정

0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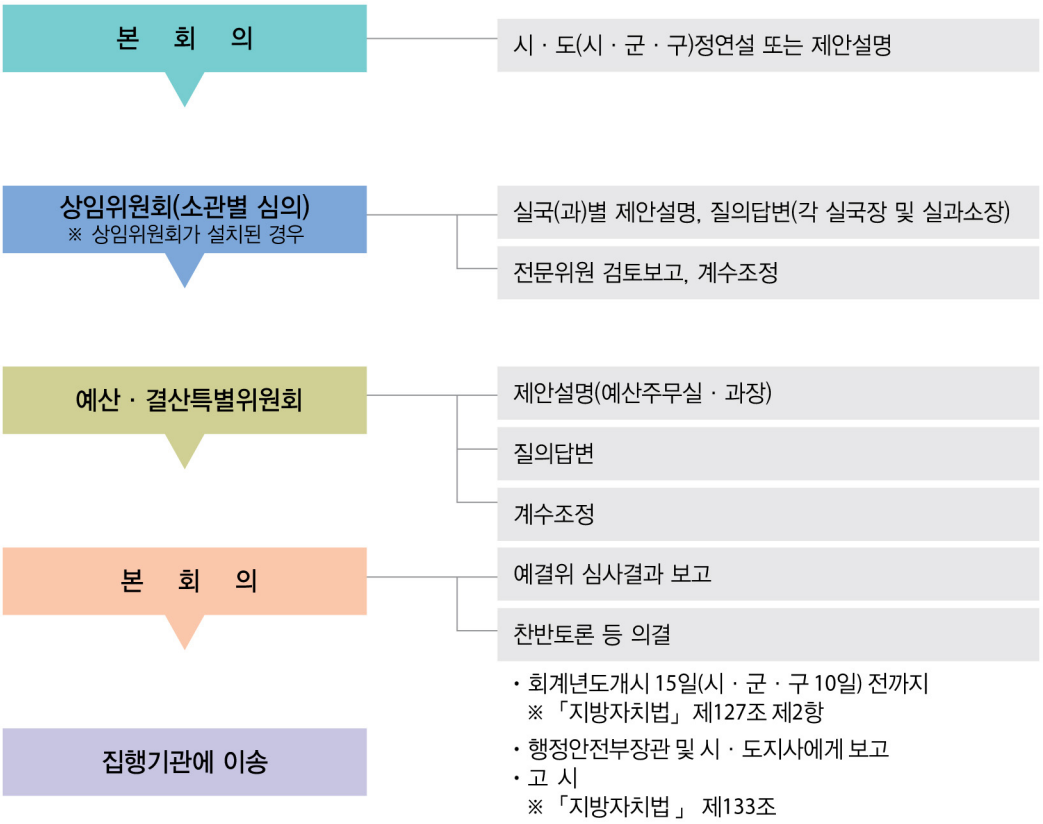
04 예산심의 절차

⚙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전(시·도는 50일전, 시·군·구는 40일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함**

»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함

»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와 계수 조정, 소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 조정을 거친 후 본회의의 의결로서 예산안을 확정함

〈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절차 〉



⚙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 법령에 따른 의무적 부담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 복구 경비를 삭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05 결산 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임**

» 지방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경제적 효과를 파악함

»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원과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사전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신청함**

〈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승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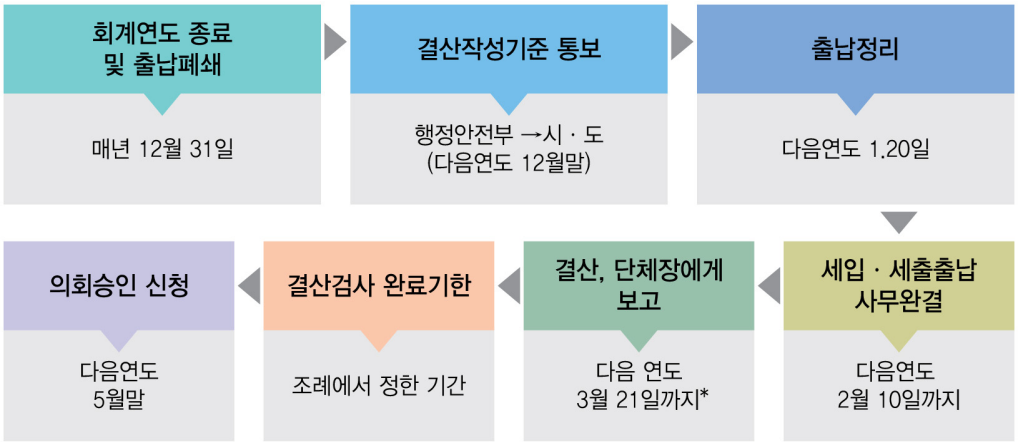
<table>
<tr><th>구 분</th><th>결산검사 위원수</th><th>결산 검사</th><th>결산 승인</th></tr>
<tr><td>시·도</td><td>5인 이상
~ 10인 이하</td><td rowspan="2">•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이 주관함
•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td><td rowspan="2">•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 지방의회의 승인</td></tr>
<tr><td>시·군·구</td><td>3인 이상
~ 5인 이하</td></tr>
</table>

⚙ **지방의회는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결산승인을 함**

» 지방의회의 결산안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함**

〈 결산업무 과정 〉



* 윤년(2월을 29일로 둔 해)의 경우 3월 20일까지(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지방의회 결산안 승인 절차 〉



06 예산·결산 관련 지방의원의 역할

≪ 예산안 심의 ≫

- 예산 내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에 따라 세출내역이 다르게 편성되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파악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투자심사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방의회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서의 구성 및 예산안의 각종 분류 및 편성체계를 이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은 지출용도가 정해져 있음
  - 인력운영비,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법정지출, 교육재정지원 경비, 조정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금 등 법적의무경비는 지방의원이 삭감·조정 등이 어려움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는 없음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재의결된 예산안의 사례

❖ (조례명) ○○광역시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

❖ (판결요지) 의회인턴을 임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2012추60)

세입예산 / 세출예산 심의 시 주요 착안사항

〈 세입예산안 심의 〉

❖ 세입 예산안 심사 시 세입액수의 추계가 적정한 지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수수료 등 행정원가를 파악하여 현실화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표준세율, 탄력세율 활용을 검토

〈 세출예산안 심의 〉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의회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관심
❖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여부와 민간 보조금의 교부 타당성 등
❖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점검하여 인건비나 물건비 등 내부관리경비 절감
❖ 재정운영에 있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구조상 탄력성을 확보
❖ 국고보조사업(시·도보조사업)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 부담비율 반영 여부
❖ 예측치 못한 재정수요(재난·재해 등)에 대한 재원의 적정성 여부
❖ 지방의회의 건의 및 지적사항 반영 여부

≪ 결산 심사 ≫

⚙ 결산 심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결산결과를 통해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집행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의 역할이 요구됨

⚙ 결산 심사시 일반적인 회계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의 주된 역할이므로 지방의원은 행정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평가에 관심을 두어야 함

결산 심사 시 주요 착안사항

❖ 예산의 전체적 집행상황과 주요 사업별 사업효과 여부
❖ 예산절감 노력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여부
❖ 부채(지방채, 채무부담, 차입금 등)는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 여부
❖ 결산 결과를 잘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할 필요

참고1 지방세 과목구조

■ 지방세

⚙ (세목) 11개 세목으로 구성 * '11년 세목간소화(16개→11개)

» 도세(6개) vs. 시·군세(5개) / 특·광역시세(9개) vs. 자치구세(2개)



※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세수 귀속

⚙ (규모) '18년 79.0조원(지방예산 210.7조원의 37.5%) *'18년 국세 268.2조원

» 취득세 21.8조(27.6%), 지방소득세 14.2조(18.0%), 재산세 10.6조(13.4%), 자동차세 7.5조(9.5%), 지방소비세 6.9조 (8.7%), 지방교육세 6.5조(8.2%), 담배소비세 3.5조(4.4%), 기타 8.0조(10.1%) 등

» 유형별 : 시·도세 54.7조(69.2%) vs. 시·군·구세 24.3조(30.8%)

» 세목별 : 취득세 21.8조(27.6%), 지방소득세 14.2조(18.0%), 재산세 10.6조(13.4%) 등

참고2 지방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과 동일한 활동이 이루어지나, 지방재정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해당됨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재원 구조(2017년)]

지방교육재정	국가지원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내국세 교부금 :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 · 교육세 교부금 : 국세교육세 중 일부[금융 · 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 개별소비세액의 30%(등 · 중유, 부탄 및 부산물 유류 15%), 교통세액(휘발유 · 경유)의 15%,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 국세교육세 중 일부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
		국고보조금	· 국고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 ~ 25%, 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43.99%, 레저(경주 · 마권)세액의 4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 전 입 금	· 특별시 ·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시 · 도세 전 입 금	· 시 · 도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3.6% ~ 10% → 특별시10%, 광역시 및 경기 5%, 그밖에 도 3.6%
		교부금 보전금	· 지방소비세 확대분(부가가치세의 6%) 중, 20.27%(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기 타	· 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
	자체수입		·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차입 및 기타		·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www.eduinfo.go.kr)〉

참고3 지방재정 현황

■ 예산 및 기금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예산규모		기금운용규모 (통합관리기금제외)
	총계	순계	
'18년 당초	284.4	210.7	23.5
	· 일반회계 237.9 · 특별회계 46.5	· 일반회계 178.7 · 특별회계 32.0	
'17년 당초	259.4	193.2	22.3
	· 일반회계 216.0 · 특별회계 43.4	· 일반회계 163.7 · 특별회계 29.5	

※ 내·외부거래 : 전출입금, 예수예탁금, 융자 및 융자회수금,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등

■ 통합재정 (예산+기금)

(단위 : 조원)

구 분	통합재정수입(A)	통합재정지출(B)	통합재정수지(A-B) * 순세계잉여금(17.9조)포함시
'18년 당초	190.8(15.0조, 8.5% ↑)	209.3(19.2조, 10.1% ↑)	△18.5
	· 일반회계 168.0(14.1조 ↑) · 특별회계 20.8(1.0조 ↑) · 기금 2.0(0.1조 ↓)	· 일반회계 162.6(15.2조 ↑) · 특별회계 42.6(3.6조 ↑) · 기금 4.1(0.3조 ↑)	* 0.6조 적자
'17년 당초	175.8	190.2	△14.4
	· 일반회계 153.9 · 특별회계 19.8 · 기금 2.1	· 일반회계 147.4 · 특별회계 39.0 · 기금 3.7	* 4.8조 흑자

※ 통합재정수입·지출은 총수입·총지출에서 회계간·자치단체간 내·외부거래 및 보전수입 (차입금, 전년도이월금 등)·보전지출(차입금상환, 다음연도이월금 등)을 제외한 자치 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

- ▸ 통합재정수입(순계) = 총수입(일반+특별+기금수입) - 보전수입(차입금, 지난연도 이월금 등)
- ▸ 통합재정지출(순계) = 총지출(일반+특별+기금수입) - 보전지출(차입금상환, 다음연도 이월금 등)
- ▸ 통합재정수지 = 수입(총수입-보전수입) - 지출(총지출-보전지출)

■ 재정지표

구 분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재정자주도(일반회계)	자체수입대비인건비
'18년 당초	53.4%* (46.8%)	75.3% (68.7%)	21.8%(미해결 71개)
'17년 당초	53.7%* (47.2%)	74.9% (68.4%)	21.8%(미해결 71개)
증 감	↓0.4% (↓0.4%)	↑0.2% (↑0.3%)	-

* 2010년이후 현황 : 52.2%('10)→ 51.9%('11)→ 52.3%('12)→ 51.1%('13)→ 50.3('14)→ 50.6%('15)→ 52.5%('16)→ 53.7%('17)→ 53.4%('18)

※ ( )은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세외수입에서 내부거래(전입금 등), 잉여금(불용, 초과수입)을 제외

04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구성은 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을 분립시키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 놓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은 하지만 그 집행은 관여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은 하지만 그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함

⚙ **각각 자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 의안의 발의권(법 §66) • 의결권(법 §39) – 조례의 제정·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부과·징수 – 예산외 의무부담 등 • 행정사무감사·조사권(법 §41) • 서류의 제출요구권(법 §40,§41④)	•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법 §101) • 의안의 제출권(법 §66) •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법 §103) • 조례의 공포권(법 §26) • 예산안의 편성·제출권(법 §127) •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권(법 §131)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법 §42) • 임시회의 소집 공고권(법 §45)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권(법 §42) • 임시회의 요구권(법 §45) • 부의안건의 공고권(법 §46) • 위원회 개최 요구권(법 §61)
• 청원의 심사와 처리권(법 §75) • 청원서 이송·처리결과 보고 요구권(법 §76) • 의회사무직원의 임명 추천권(법 §91) • 재의요구된 조례안 재의결·확정권(법 §26) • 재의요구된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결·확정권(법 §107) • 재의요구된 예산관련 의결의 재의결·확정권(법 §108) • 재의지시된 의회의결의 재의결·확정권(법 §172) • 선결처분의 사후 승인권(법 §109)	•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권(법 §91) • 조례안의 재의요구권(법 §26) •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법 §107) •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법 §108) • 재의 지시에 의한 재의요구·제소권(법 §172) • 선결처분권(법 §109)

01 행정사무 감사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권한임**

⚙ 매년 1회, 시·도에 있어서는 14일, 시·군·구는 9일 이내에 실시함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선택적 실시)

지방의회의 감사 관련 권한

❖ 현지 확인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요구
❖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시·도위임사무 중 국회 및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감사 대상임

⚙ 지방의회 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당연 감사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대상임

» 본회의 의결을 얻어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위탁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이 이에 해당됨

02 행정사무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본회의가 의결한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함

※ 기관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사무이므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되어야 하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에 비로소 조사함

» 행정조사 발의서에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발의 이유·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비교 〉

구 분	감 사	조 사
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
시기	(시도) 매년 정례회중 14일 이내 (시군구) 매년 정례회중 9일 이내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결정함)
발동요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실시
대상사무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 * 국회 또는 시도의회 감사사항 제외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제외

03 한계

- 행정사무 감사·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음
- 지방의회가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행정작용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행정감사나 조사는 할 수 없음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는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에 한정함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사적이용 가능성이 있는 자료 또는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요구할 수 없음
- 의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04 선결처분 사후 승인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 구속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
❖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II.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03

지방의회의 운영

01 소집

01 정례회

-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함**
  - 정례회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별도의 소집요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장이 소집함
  - 1차 정례회가 매년 5~6월, 2차 정례회는 11~12월에 개최함
    ※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개최할 수 있음

02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
  - 임시회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소집 가능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국·과장)이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함**
  - 의회사무처(국·과)장이 소집하되 공고시점은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1일부터 가능

03 공고

- 지방의회의장은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를 위해 반드시 집회공고를 하여야 함
-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시·장소 등을 집회일 3일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함 (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
  - » 의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개회할 수 없고 공고하여야 함
    - ※ 정례회는 소집요구가 필요 없으나 집회공고는 하여야 함

02 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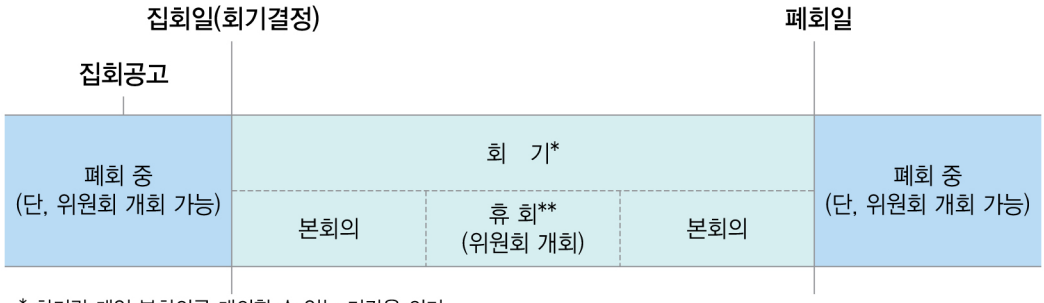
01 회기의 결정

-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함
- 회기는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바로 상정 의결
  - » 회기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도 집회당일부터 회기는 계속 진행됨
  - » 집회가 된지 며칠 후에 회기를 결정할 때에도 집회한 날부터 계산하여 회기 결정함
- 회기는 의결로 연장 가능함

02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 회의 총일수 및 정례(임시)회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하며 휴회기간은 회기에 산입함
  - » 폐회중 위원회 회의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모두 회기에 포함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한 회기 중에 심사 및 의결되지 못하였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함
  - » 지방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미의결된 안건은 폐기됨

〈 지방의회 회기 〉



* 회기란 매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 휴회는 위원회 활동기간의 부여, 의원의 자료 수집 및 기타 활동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는 것을 말함

03 회의의 운영

01 발의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함**

  ※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 제출 가능

- **지방의회에 발의되는 의안은 일정한 요건(발의·형식·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접수되고 심의·의결하게 됨**

  ※ 3대 요건 미충족시 의장은 의안반려나 보완을 요청해야 하나, 성립요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와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나 본회의의 심사·심의단계에서 판단하도록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의안의 3대 요건

❖ 발의요건 : 자격있는 자의 발의(연서의원의 수) 또는 제출여부
❖ 형식요건 : 의안명, 제안 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
❖ 성립요건 : 의안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인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열거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안의 유형으로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으로 분류**

02 정족수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의사정족수)**
  - » 회의 중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함
- **특별한 규정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의결정족수)**
  - »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봄

03 표결

-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
- **표결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

04 회의의 공개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
  - »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함

05 기타

-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회기계속의 원칙)**
  - » 다만, 의원 임기가 끝나는 경우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됨
-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적용범위

- ❖ 동일한 회기 : 회기가 다르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함
- ❖ 동일내용 안건 : 같은 회기, 동일 명칭이라도 내용이 상이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함
- ❖ 동일한 회의체 : 본회의와 위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함

Ⅲ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1. 지위 및 신분변동
2. 지방의원의 권한
3. 지방의원의 의무

Ⅲ.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01 지위 및 신분변동

01 지방공무원

⚙ **지방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가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도교육감

» 지방의원에 대한 임기, 지급경비, 의무 등은 「지방자치법령」에 따름

02 지방의원의 신분변동

01 의원 사직

⚙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음**

»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

※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 지방의원이 공직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다면, 의원사직서는 의장에게 접수된 때 사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공직선거법」 제53조)

02 의원 퇴직

⚙ **지방의원은 ① 겸직할 수 없는 직(법 제35조①항)에 취임한 때, ② 피선거권을 상실(해당 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포함)한 때, ③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퇴직함(「지방자치법」 제78조)**

⚙ **지방의원이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함**

03 의원의 자격심사

- **지방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함**
  - » 피심의원은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음
- **자격심사의 의결과정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심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상실함**

04 의원 징계

-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음**
  - ※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함**

구 분	대 상	비 고
품위유지 등 의무위반	•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위반	법 제36조
	• 청렴·품위유지 위반	
	• 공공단체 등과 계약 등으로 이익·지위 취득 행위, 타인의 취득알선 행위	
	• 타인모독 및 사생활 관련 발언	법 제83조
회의질서유지 의무위반	• 회의장의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법 제82조
	• 폭력행사, 타인 발언방해, 허가 없이 연단·단상에 등단하는 행위	법 제84조
	•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 제척·회피 위반 등	회의규칙
비밀준수 의무위반	• 비공개회의 내용 및 회의록을 타인에게 열람·복사·전재하게 한 행위 등	회의규칙
회의출석 의무위반	• 정당한 이유없이 2일 이상 결석했을 때 의장(위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회의규칙
조례·규칙 위배	• 조례·규칙에 위반하는 행위	법 제86조

03 겸직금지

■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공무원 등 「지방자치법」 제35조①항에 나열된 아래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됨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임직원은 상근 임직원뿐만 아니라 비상근 임직원도 포함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교원의 지방의원 당선시 휴직(「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됨

* 「고등교육법」 제14조①및②의 교원(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 영리목적 거래금지 등(「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전단)

⚙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음

※ 연관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① 및 ②
- 지방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대표자인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금지(「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후단)

⚙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지방의회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지방의원 겸직이 금지되는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지방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공공단체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 09-0362, '09.12.14)**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설치·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 **관리인 해석례(법제처 10-0037, '10.4.16)**

○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

❖ **유사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①3호)**

○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Ⅲ.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02

지방의원의 권한

01 의결권 등

01 의안 발의

- 지방의원이 의회에서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 » 단, 업무의 성질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행정기구 설치, 인사권 등)과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발의할 수 없음
-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02 동의 발의

- 동의란 합의체 구성원이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안하는 일 또는 그 제안을 말함
- 동의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두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 » 수정동의란 의안을 수정하기 위해 일정한 안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으로 의안의 발의와 유사함
  - » 번안동의는 먼저 가결한 의안을 번복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안건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을 할 수 없음

03 의회에서 발언

- 지방의원은 의회에서 질문·토론·의안 제안사유 등 의사의 운영 및 안건 등에 대하여 발언 권한을 가짐

-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위원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의장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시기를 정함

지방의원 발언의 면책특권 부여 여부

❖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 지방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04 표결

- 표결권은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권한으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
  - »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이의유무, 기립 또는 거수 등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
  -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
- 의장도 본회의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05 의회에서의 선거 및 피선거

- 지방의원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내부적 선거권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짐
  - »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함
  - » 의장과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함

06 청원소개

-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에는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함

07 의회의 의장에 대한 특정행위 요구권

⚙ **지방의원은 의회 또는 의장에게 어떤 행위를 구하는 요구권을 가짐**

1. 임시회 소집요구권(「지방자치법」 제45조②항)
2. 의원의 자격심사 요구권(「지방자치법」 제79조①항)
3. 의원의 징계요구권(「지방자치법」 제83조②항)
4.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지방자치법」 제41조,42조)
5. 본회의 재개요구권(회의규칙)
6. 서류제출요구권(「지방자치법」 제40조)
7. 서면질문요구권(회의규칙)

02 정책지원

01 전문위원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 있음**

»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의회별 의원정수기준에 의하여 책정토록 하고 있음

⚙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함**

» 전문위원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기능 수행함

»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국·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02 사무기구의 정책부서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조례에 따라 자율 설치되므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입법 및 예산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시·도의회는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음**

※ 제주도의회는 도의회가 시군의회의 기능을 포괄 수행함에 따라 전문위원 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03 의정비

⚙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 받음 (「지방자치법」 제33조)

»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로 정함

01 의정활동비

⚙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 지급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02 여비

⚙ 지방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여비 지급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

1. 국내 여비

구 분	준 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 국외 항공운임

구 분	준 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 분	준 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03 월정수당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
-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월정수당의 수준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10인)에서 결정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범위에서 인상시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 가능

04 지방의원 상해·사망 보상제도

- 회기중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때 지급함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급기준(영 제35조①항)

- ❖ 사망시 :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
- ❖ 장애시 :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
- ❖ 상해시 : 치료비 전액, 다만 직무상 장애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음

Ⅲ.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03

지방의원의 의무

01 공익우선 및 청렴 등

⚙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지방의원이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함

⚙ 청렴 의무

» 지방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을 수 없음

⚙ 품위유지 의무

»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사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 의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을 의미

⚙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 지방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하거나 타인을 위한 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기타 의무

» 회의의 질서유지,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발언방해 등의 금지, 본회의나 소속위원회의 출석,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등의 의무가 있음

02 겸직 신고

-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함
  - »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친목회장 등 자생적인 직은 제외)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포함
-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실시하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함
  - »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
- 의장은 겸직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법 제36조제2항(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03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01 재산등록

- 신고기한 : 지방의원이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초등록을 하고 매년 정기적(1~2월)으로 변동사항 신고
- 대상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재산
- 재산공개 : 지방의원 등의 등록재산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02 주식백지신탁

⚙ **대 상 자 : 지방의원 당선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①항의2)**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 이해관계자 : 배우자(사실혼의 배우자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

⚙ **신고기준일**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으로 3천만 원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함

☞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의 추가 내용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참조

04 행동강령 준수

⚙ **당초 지방의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 제정·시행**

※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11. 2. 3. 대통령령으로 시행

⚙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

»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 · 의결 회피

» 외부 기관 · 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제13조)

–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 ·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제14조)

– 지방의회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의무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행동강령의 교육 · 상담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 되도록 함

»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

–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징계 등 조치(§19)

» 각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지방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기초로 지방의회별 특성과 근무여건에 적합한 자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운영(§23)

☞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05 의무위반의 효과

⚙ **지방의원의 의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종 의무위반, 모욕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Ⅳ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1. 지역주민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IV.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01

지역주민

01 주민의 의의

01 주민의 지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한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 시·군·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도 주민에 포함되나, 권리·의무는 법령에 따라 제한됨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및 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후보 출마 등
- **주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짐**

02 주민참여

- **주민은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도교육감을 선출**
- **대의제의 제 기능의 보완과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기여**
  - » 주민이 필요한 제도를 직접 수립(조례 제정·개폐 청구)하거나,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강화(주민소환)

- 「지방자치법」에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 등을 규정
- 행정서비스 개선 및 자의적 행정 방지
  - »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수요·요구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
  - »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자의적 행정을 방지(주민투표)하고, 위법사항 시정 요청(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02 주민참여 제도

01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

-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
- 법령 위반사항, 지방세·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 설치 반대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연서 주민수 최소 청구요건 * 아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시·도·50만 이상 대도시) 19세 이상 주민총수 1/100이상 1/70 이하
❖ (시·군·자치구)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 이하

※ 지역별 인구 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주민조례 개폐 청구요건(서명자 수) 완화 개정안 마련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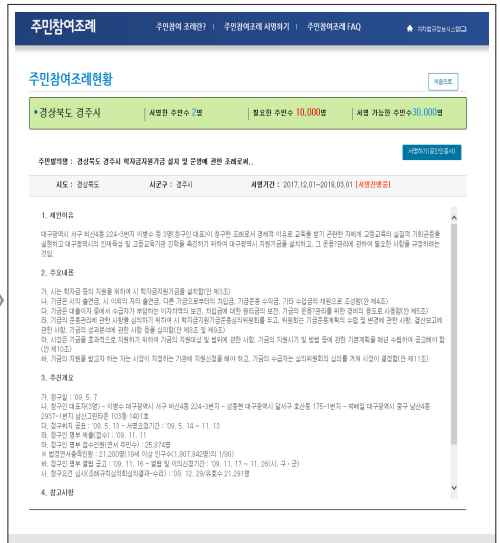
02 주민참여조례시스템(www.ejorye.go.kr) 구축 운영

주민참여조례시스템(www.ejorye.go.kr)에서 주민들의 현장서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18.1.15. 개통)

〈 주민참여조례시스템 이용 절차 〉



❶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선택



❷ 주민발의 조례안 확인 후, 서명하기 버튼 선택



❸ 전자서명 인증



❹ 서명내용 확인

03 주민감사 청구(「지방자치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하고 있음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끝난 날부터 2년 경과시 제기불가

청구인원 및 기관

❖ 시·도 500명 /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 그밖의 시·군·자치구 200명 범위내 조례로 정함
❖ 시·도 →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 시·도지사에게 청구

주민감사 청구 사례

❖ 경기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주민(392명) 서명을 통해 감사 청구('13.4.1.), 경기도에서 감사실시(6.5~7.22)하여 기관경고 1건, 개인주의 3건 등 행정상 처분

04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주민소송 성립 전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있음

주민소송 대상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

주민소송 제기 사례

❖ 경기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시민단체와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소송단(12명)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잘못된 수요예측과 절차위반으로 세금낭비를 초래”했다는 사유로 주민소송 제기('13.10.10 제기, 3심 계류)

05 주민투표(「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법」)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함

  ※ 국가정책(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대해 주민의견 수렴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장 요구에 의해 해당 지자체장이 실시

- 찬성·반대 또는 2가지 안 중 택일하는 형식으로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투표결과 확정

  ※ 확정 내용에 따른 행·재정상 조치 및 2년 내 확정 내용 변경 불가

주체별 청구요건

- ❖ 주민 : 투표권자 1/20~1/5 이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 ❖ 지방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 지방자치단체장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직권 실시

주민투표 사례

- ❖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와 관련,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여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를 발의('11.8.1)
- ❖ ①소득 하위 50% 학생 대상 단계적 실시와 ②모든 학생 대상 전면 실시 중 선택하도록 했으나, 투표율 25.7%의 개표요건(1/3 이상) 미흡으로 미개표

06 주민소환(「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음 * 청구사유 제한 없음

-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소환이 결정됨

대상별 청구요건

- ❖ 시·도지사 : 청구권자 10/100 이상의 서명(지역 균형요건 추가)
- ❖ 시장·군수·구청장 : 청구권자 15/100 이상의 서명(지역 균형요건 추가)
- ❖ 지방의원(비례대표 제외) : 청구권자 20/100 이상의 서명(지역 균형요건 추가)

대상별 청구요건

❖ 경기도 하남시의 “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된 갈등”으로 하남시장 및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07.12.12)

❖ 하남시장과 시의원 1명은 투표율 1/3 미달로 미개표하였고, 하남시의원 2명은 각각 투표율 37.6%, 찬성율 85.8%·93.6%로 소환

〈 주민직접참여 제도 〉

구 분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 소송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청구대상	▸법령위반, 지방세부과, 행정기구·공공시설 설치 등 제외	▸지자체 및 장의 권한사무가 법령위반, 공익을 저해할 경우	▸주민감사 청구한 사항 중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제기	▸지자체 주요 결정 사항 ※ 국가사무 등 제외	▸선출직 지방공직자 ※비례대표 제외
청구자	▸19세이상주민 (조례로 규정) ※ (시·도· 50만 이상 대도시) 1/100~1/70 (시·군·자치구) 1/50~1/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	▸19세이상 주민 ※ 시도 500명, 50만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미만 연서	▸감사청구를 경유한 주민이 소송제기 사유별* 해당일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송 제기 (이 경우 1인소송 가능) * 소송제기 사유 · 청구수리후 60일 내 감사 미종결 · 감사결과에 불복 · 지자체장이 조치요구 미이행 · 지자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	▸19세이상주민 (조례로 규정) ▸의회, 단체장 ※ 주민청구시 청구권자 총수의 1/20~1/5 범위내 서명	▸19세이상 주민 ※ 시도지사 10/100, 시·군수 15/100, 지방의원 20/100 이상 서명
제한사항	▸선거기간중 서명요청금지 (「공선법」 §33)	▸사무처리일부터 2년경과시 제기 불가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불가 ※주민투표일 지정불가 ※소환사유 제한없음	
심사등	▸지자체장 (조례규칙심의회)	▸상급기관 (감사청구심의회)		▸지자체장	▸관할선관위 ※소환 투표 대상자 소명

07 주민참여 예산제도(「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행정수요·우선순위를 반영함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서면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의 방법을 실시하여 의견수렴(시행령 제46조)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운영방법 등은 조례로 정함

03 주민과의 소통·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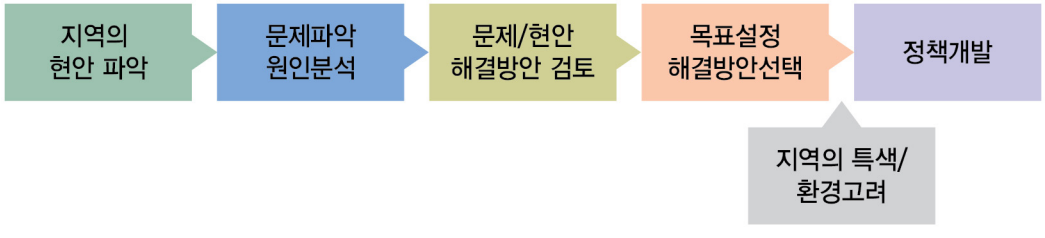
01 소통·홍보 방법

- 지방의원의 지역주민들과 일반적인 소통·홍보 수단인 의회 홈페이지, 의회 회보, SNS 등을 활용하여 소통·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 의원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의회 홈페이지와 링크해 놓음으로써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음
- 지방의회나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설명회), 공청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시민단체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구축함
- 청원제도를 숙지하고 청원의 소개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음
  - ☞ 청원제도에 관한 추가적 설명은 〈참고1〉 참조

02 지역현안의 정책화

- 지방의회가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함
- 현 실태와 원인이 파악되고 나면 해결목표와 대안을 찾아내고 여러 대안 중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이 과정이 정책개발 과정임

〈 정책개발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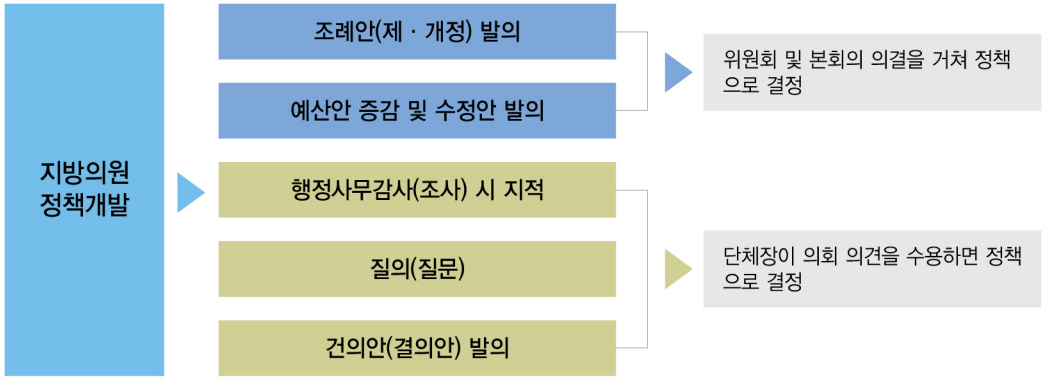
- 지방의원이 원활하게 정책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지원부서, 전문가, 정책개발을 위한 모임 등을 잘 활용해야 함

정책개발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방법

- ❖ 지방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각 지방의회는 입법 및 법률고문제도를 두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정책 연구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활용할 수도 있음
- ❖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 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도 가능함

- 정책이 개발되면 정책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
- 지방의원이 개발한 정책은 지방의회에 안건(조례안, 예산안 등)으로 제출되어 의결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결정됨
-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조사), 질의(질문), 건의안(결의안) 등의 방식을 통해 단체장에게 제안하여 정책으로 결정되기도 함

〈 정책결정 과정 〉



IV.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0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01 지방의회 협의제

0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을 회원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4명,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이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 별도의 협의회사무소를 두고,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협의회 자체에서 채용한 계약직 전문위원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예산은 시·도별 분담금으로 편성·충당

0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전국 15개 시·도의 시·군·자치구의장 대표를 회원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1명, 감사 2명이며, 임기는 2년
- 별도의 협의회사무소를 두고, 동 협의회 회장인 시·군·자치구의회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협의회 자체에서 채용한 계약직 전문위원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예산은 시·군·자치구별 분담금으로 편성·충당

지방 4대 협의체

❖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함

※ 근거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 각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 건의사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협의체 및 연합체에 통보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0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제도

01 사무의 위탁

◎ **업무의 중복 방지 등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해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등 환경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이 가능한 분야

» 환경보전, 수질개선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용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분야 등

※ 근거 :「지방자치법」 제151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위탁 관련 사항을 협의(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경비의 부담 방법 등)한 후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사무위탁 현황 : '12년 50건, '13년 53건, '14년 57건, '15년 58건, '16년 36건, '17년 27건

02 행정협의회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임**
  - » 광역계획 및 그 집행,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재정업무의 조정 분야 등
    - ※ 근거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
- **특정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관계 자치단체간 협의(처리사무, 경비의 부담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 사항 등 포함)후 규약을 제정함**
  - » 지방의회에서 협의회 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을 의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 '17년말 기준, 102개 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권역별 48개, 기능별 54개)

03 자치단체조합

- **법인으로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함**
  - ※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와 동일하지만,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 근거 :「지방자치법」제159조 내지 제164조
- **조합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필요성, 추진방법 등)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조합결성 협의 및 규약을 제정함**
  - » 지방의회에서 조합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을 의결 후 조합규약(안)·지방의회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설립
    - ※ '17년말 기준, 8개 조합이 구성 운영

04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발생시 중앙(행안부) 및 시·도 분쟁조정위 조정

※ 근거 :「지방자치법」제148조 내지 제150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함

※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 가능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동일 시·도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시·도지사가 그 분쟁을 조정함

※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 가능

IV.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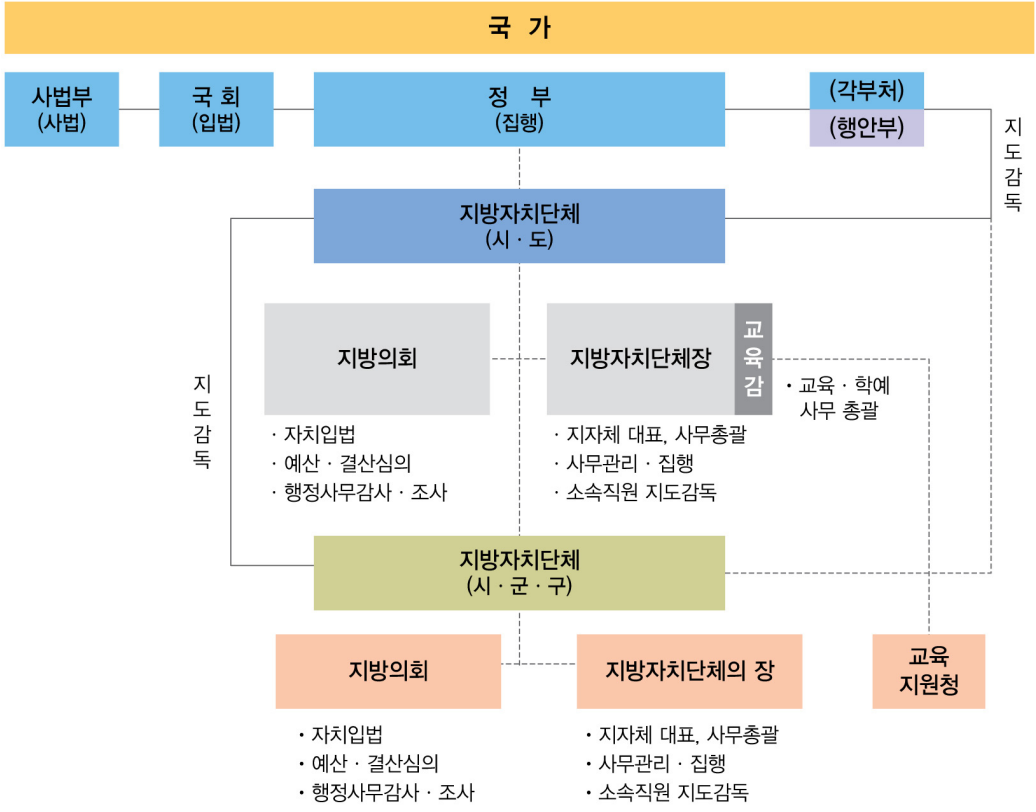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01 일반적 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고 전체 국가를 이루는 한 구성 부분으로 파악해야 함**

» 국가는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구체화하고, 감독활동을 하며,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필요로 함



☞ 중앙 정부 조직 및 각 부처 주요기능은 〈참고2〉 참조

02 국가의 지도·감독

- **중앙정부는 법령 제·개정 및 지도·감독을 통해 관여함**
  - 각종 법령 제·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근거, 한계, 업무수행 절차 등을 설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1차), 주무부장관(2차)의 지도·감독·감사를 받음**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사항에 한정하여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감사함
-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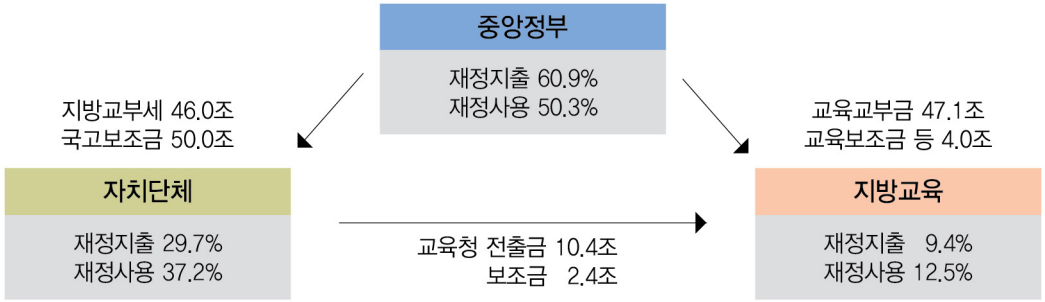
- **위법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상급기관은 재의·제소 지시 가능함**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 가능함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주무부장관·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가능함

0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간 사무권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 우리나라는 사무권한과 재정권의 수직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으로 충당되고 있음**
  - »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보조금을 시도교육청에 지원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세를 비롯하여 담배소비세 및 시도세전출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합산한 2018년 통합재정규모는 수입 638조(국가447, 지방191), 지출 638조(국가429, 지방209)로 파악됨**

  * 지방교육 재정규모는 66.2조
  - » 조세수입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7.5:22.5의 구조임
  - »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는 50.3%, 자치단체는 37.2%, 지방교육은 12.5%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



주)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참고1 청 원

■ 의의

⚙ **청원이란 주민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등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을 개진하고 시정이나 구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지방자치법」 §73)

■ 청원의 처리

⚙ **청원의 제출**

» 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주민)과 법인 또는 내·외국인 등임

» 지방의원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함

»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함

※ 접수된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 가능함

⚙ **청원의 내용**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징계나 처벌의 요구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음

⚙ **청원의 심사 및 처리**

»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은 지방의회에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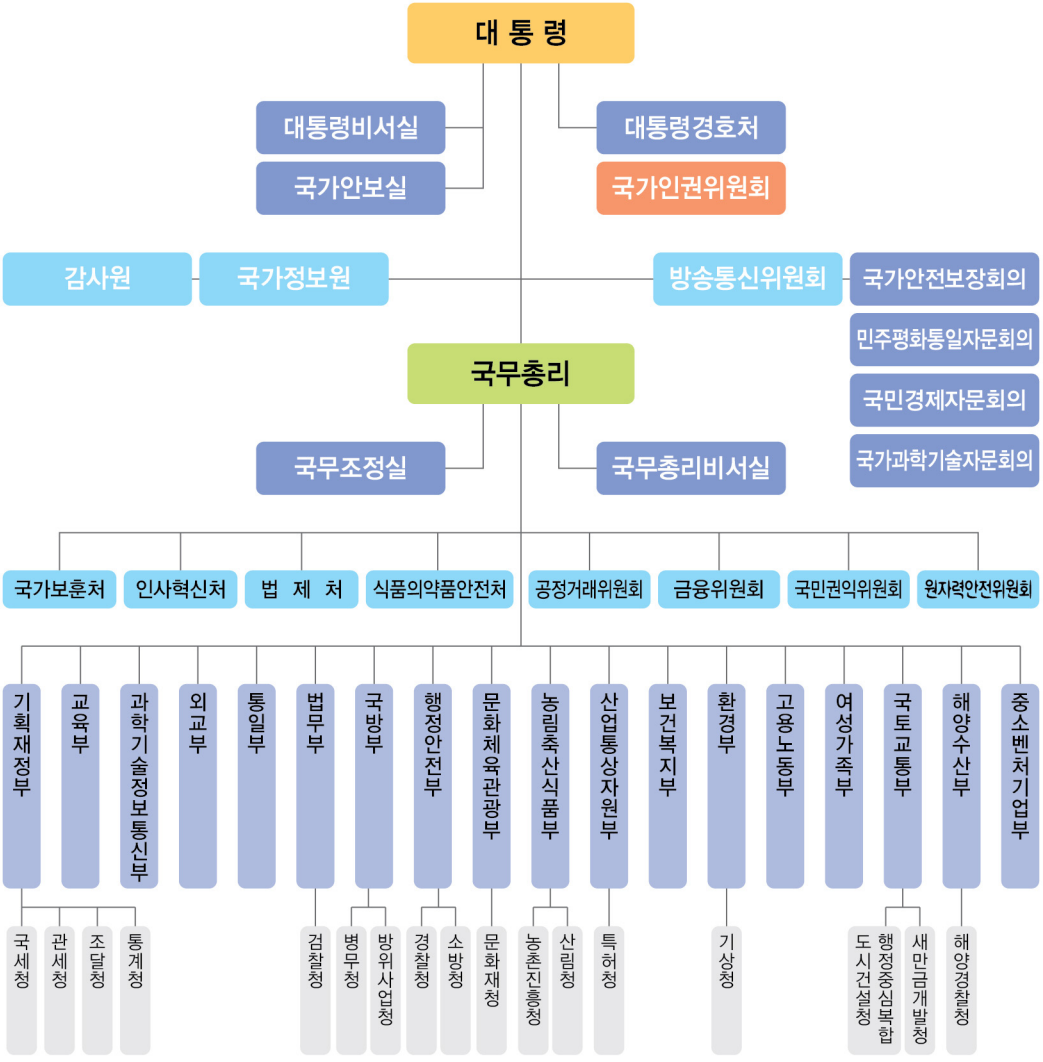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

참고2 중앙정부 조직 및 각 부처 주요기능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 / 2원 4실 6위원회('17.12월 기준)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정부조직법」등 법률로 정함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 각 부처 주요기능(1)

기관명	소 관 사 무	외청
국무조정실	•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정책 조정, • 사회위험·갈등 관리, 규제개혁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법제처	• 법령안·조약안 심사, 법제에 관한 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	
기획재정부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 •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관세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 학술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 및 인력 양성 •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	
외교부	• 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통일부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법무부	•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검찰청
국방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사 관련 사무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 정부혁신 •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보호 • 지방자치제도·재정·세제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영상·체육·관광 관련 사무 • 국정에 대한 홍보	문화재청

■ 각 부처 주요기능(2)

기관명	소 관 사 무	외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특허청
보건복지부	• 보건위생·방역·의(醫)정·약(藥)정·각종 • 사회보장 및 노인·장애인 관련 사무	
환경부	• 자연·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기상청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의 총괄 •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 해양수산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상공인 보호·지원	

V

지방의원 관련 비위사례 및 유의사항

지방의원 관련 비위사례 및 유의사항

01 지방의원 관련 인식

» 이권에 관여하여 부패하거나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

❖ ○○시청공무원노조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가 '시의원들은 사적인 이권에 관여해 청탁이나 압력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표명(언론보도, '14.9)

❖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 20년 국민인식 조사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불만족이 47.7%(만족하다는 답변 23.5%), 국민들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부패 및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만족 답변(행정안전부, '15.6)

02 지방의원 관련 비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인사 관련

〈 예산편성권 개입 〉

» **(재량사업비)** 지방의원이 특정 업체를 위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 **(자율편성예산)**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넘긴 '자율편성예산'으로 지방의원 관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 불공정 집행(감사원, '18.4)

⇒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

주요 위반사례

❖ ○○지법은 ○○○판사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선고 및 2천만원 추징('18.1.11, 연합뉴스)

❖ 감사원은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넘긴 '자율편성예산' 시행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도의원 민원을 대거 반영, 스포츠파크 '팀업캠퍼스'를 부당 조성한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18.4., 감사원)

〈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

» 지방의원(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회사와 해당 자치단체 간 수의계약 체결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지방자치법」 §35⑤전단 (영리목적 거래금지)	「지방계약법」 §33조①및②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금지	•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 지방의원 배우자, 의원 직계 존·비속, 의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 금지

⇒ **지방의원·배우자·직계비속이 대표자인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

주요 위반사례

❖ 감사원은 6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의원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감사원, '18.5.)

❖ ○○시 시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건설업체 직원에게 수의계약이나 하도급 공사를 요구하고, 면허도 없는 아들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등 1억4천여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검찰, '15.2)

❖ 지방의원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한 8개 자치단체장에게 △건설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감사원, '12.2)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 지역구 주민 접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업무추진비 위법 집행

⇒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

주요 위반사례

❖ ○○시의회, 업무추진비 '쌈짓돈' 처럼 썼다('18.4.19, 조선일보)

❖ "세금으로 등산복 700만원" 구의원 황당 업무추진비 사례들('18.5.30, 중앙일보)

- 유흥주점에서 사용, 쪼개기 결재, 사적인 사용, 지역구 주민 접대로 선거법 위반 등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언론 및 시민단체의 비판
- 17개 시·도 중 8곳(서울,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남, 제주, 세종)만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감사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내부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지적

〈 고액 의원배지 제작 〉

» 지방의원 배지를 순금으로 제작하거나 분실한 경우 무상 교부

※ 고액 배지('16년) : 청송군(46만3천원), 의성군(45만6,500원), 청도군(45만원) 등 9개 의회

⇒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제작, 분실 시 유상 재교부**

주요 언론보도

❖ 46만원짜리 '순금 배지' 받는 지방의원들('16.9.6, 한국경제)

❖ 난 순금만 써...○○군의회 배지값 60만원('18.5.19, 중앙일보)

- 지방의원 배지를 '일반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제작하라는 행정안전부 유의사항 공문('16.7.20)에도 불구하고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원 배지를 금으로 제작한 의회가 다수로 지나친 세금 낭비라는 지적

〈 통신비 추가지급 〉

» 의정활동비 외에 지방의원 통신비를 별도 편성하여 추가 지급

⇒ **통신비는 의정활동비(205목)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지급 금지**

주요 언론보도

❖ 지방의원 통신비 이중지급...전면조사('17.7.7, KBS)

- 의정활동비에 통신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시 지방의원들이 별도로 통신비 명목으로 의원들이 매달 15만원씩 정액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 지급된 통신비 환수를 권고했으나 ○○시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환수가 어렵다는 입장

〈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인사 개입 〉

» 해당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채용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 **지방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인사 개입 금지**

주요 언론보도

❖ 사실상 내정자 채용?...지자체 공기업 '수상한 채용'('17.11.20, JTBC)

- 공공기관 취업비리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채용에 전현직 구의원 청탁에 의한 취업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
- △△구에서는 지난해, 전직 구의원과 아들이 나란히 산하 기관에 입사해 논란

⚙ 지방의원 권한 남용

〈 외유성 국외연수 〉

» 정책 연수가 아닌 관광지 방문, 연수 보고서 베끼기 · 미제출 등으로 '혈세낭비' 지적

※ '17.7월 사상 최악의 수해 발생에도 이틀 뒤 ○○도의회 의원 4명이 유럽 연수를 강행하여 '물난리 외유'라는 물의 야기

⇒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내실 운영, 결과보고서 공개 철저

주요 언론보도

❖ **줄줄 새는 혈새...빚내서 해외출장 '펑펑'('18.6.5, MBC뉴스)**

❖ **임기 말 지방의원들 '해외 연수 챙기기'...주민들 분통('18.1.26, JTBC)**

❖ **수천만원 혈세로 매년 외유 다니는 지방의원들('18.4.29, 조선일보)**

- 출장지가 발리, 하와이 등 유명관광지 이거나 출장일정에 '관광자원 시찰'이라 표기하고 구체적인 방문지를 표기하지 않는 등 내용 없는 출장이라는 비판
-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한 의원이 여러 번 출장을 가거나 추석, ○○지역 집중 호우로 인해 유례없는 수해 발생 등 부적절한 시기의 출장으로 물의야기
- 자치단체의 '공무 국외 활동 심사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귀국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터넷 자료를 베끼는 사례 多

〈 직원 등에 대한 폭언, 성추행 〉

» 동료 의원 또는 직원에게 폭언 및 성추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 실시

주요 언론보도

❖ **민주당, 성추행 의원 제명 막은 ○○구의원 전원 경고('18.3.23, 연합뉴스)**

- 성추행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 제명안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당 ○○시당은 ○○구의원 전원에게 '경고' 조치

⚙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 공공기관 등 임직원 겸직 〉

»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된 「지방자치법」 §35① 1호~9호의 직을 겸직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임직원은 상근 임직원뿐만 아니라 비상근 임직원도 포함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지방자치법」 §35① 1호~9호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법률상 지방의원 직의 퇴직 효과가 발생**

〈 교원 겸직 〉

» 「고등교육법」 §14*의 교원 직을 휴직하지 않고 겸직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고등교육법」 §14의 교원 직은 휴직**

주요 언론보도

❖ **○○구의회, 대학 교수 겸직 구의원에 30일 출석 정지('17.12.18, 뉴시스)**
- A의원은 ○○대 ○○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구청에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한기에 평균 2~3 과목을 강의한 것으로 확인
-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구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의결

〈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

»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35⑤ 위반

⇒ **「지방자치법」 §35⑤ 위반한 경우 지방의회의 징계사유**

주요 언론보도

❖ **"광주 광역·기초의원 9명 새마을회 임원 겸직...현행법 위반"('18.3.8, 연합뉴스)**
-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은 지방의원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해당 의원들의 새마을회 임원 겸직은 이러한 규정 취지에 위배된 것이라 지적하며 ○○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9명이 지역 새마을회 임원 겸직에 대하여 사퇴를 요구

❖ **○○시의회 의원 겸직신고사항 확인 부정적 주의요구('17.11, 감사원)**
- 재단법인 △△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공설장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사외이사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업집행에 관여하는 직위로서 '관리자'에 해당됨을 확인
- ○○시는 의원의 겸직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겸직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 주의 요구

〈 겸직 미신고 〉

» 상당수 지방의원이 영리법인 대표 등으로 재직하며 겸직 미신고

⇒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겸직 신고 철저**

⇒ **지방의원 겸직 현황 홈페이지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요 언론보도

❖ **지방의원 겸직실태 분석, 의원님 왜 법 어겼어요?('18.6.1, 뉴스타파)**
-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법인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
- 겸직 미신고는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나 지방의회 내부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지적

참고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금지 관련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법 규정 취지

» 법 제35조제5항은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

-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조사하는 지위에 있음
-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법제처 법령해석 09-0362, '09.12.14)

⚙ 공공단체의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09-0362, '09.12.14)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설치·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 관리인의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10-0037, '10.4.16)

»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

⇒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 직을 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하는 경우, 지방의원으로서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이는 의원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법제처 해석 사례

안건번호	내 용
09-0362 ('09.12.14)	• 운영경비 일부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 겸직은 §35⑤ 위반
10-0037 ('10.4.16)	• 새마을운동조직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은 §35⑤의 공공단체임 • 새마을운동조직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의 임원이 정관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 경우 §35⑤의 관리인에 해당
12-0025 ('12.2.23)	•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자치단체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원은 해당 비영리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음
17-0433 ('17.10.19)	• 지방의원은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10-00319 ('10.3.5)	•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의 고유업무를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거나 재정보조 등을 통하여 조직 구성이나 활동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역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거래를 하거나 의원이 해당 단체의 직을 맡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5⑤의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지방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35⑤에 위반되지 않음

⚙ 행정안전부 해석 사례

»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사례

구 분	해당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단체	(주)블랙밸리컨트리클럽, 광주 5·18 기념재단, 강원인재육성재단(장학회), 공립보육시설, 특수목적법인(산업단지유치 등), 사랑나눔 복지재단, 강원 문화재단, 지역애향장학회, 강원 테크노파크, 서울시중구문화재단, 재단 법인 제주발전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의제 21실천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 연맹 및 지회, 재향군인회 지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YMCA,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역본부, (사)장애인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구 분	해당 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가 아닌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보전경비만 지원받는 단체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 동호회 등 자생단체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Ⅵ

부 록

1. 참고자료 및 정보
2. 주요 용어 정리
3.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의 주요 행위기준

01 참고자료 및 정보

관계기관 정보

기 관 명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
행정안전부	www.mois.go.kr	02-2100-3399
자치인재개발원	www.logodi.go.kr	063-907-5100
국회의정연수원	training.assembly.go.kr	02-788-3983
지방공기업평가원	www.erc.re.kr	02-3489-27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www.balance.go.kr	02-2100-1134
자치분권위원회	www.pcad.go.kr	02-2100-2214
한국지방세연구원	www.kilf.re.kr	02-2071-27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www.krila.re.kr	033-769-999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www.gaok.or.kr	02-2170-601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www.ampcc.go.kr	02-6263-0969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www.namk.or.kr	02-790-086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www.ncac.or.kr	02-3444-5910

참고 홈페이지

추가정보 명	홈페이지 주소	정보를 찾는 방법	자료명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365 (lofin.mois.go.kr)	지방재정통계 ⇒ 예산 ⇒ 예산현황 ⇒ 통합재정 개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기획재정부 (www.mosf.go.kr)	정책 ⇒ 정책게시판 ⇒ 검색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지방의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청렴연수원 ⇒ 공부방 ⇒공직자행동강령	홈페이지 자료
재산등록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www.peti.go.kr)	공직윤리제도 ⇒ 재산등록 및 심사	홈페이지 자료
주식백지신탁		공직윤리제도 ⇒ 주식백지 신탁제도	홈페이지 자료
선물신고		공직윤리제도 ⇒ 선물신고	홈페이지 자료

참고 문헌

발행처	참고자료 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2018),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2018),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2016), 지방의회백서(2015),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작성 세부지침(2019),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2018)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2018), 경제·재정수첩(2018),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2012)
법제처	법제업무편람(2016)

02 주요 용어 정리

■ 지방의회 운영 관련

⚙ 개회·개의

-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
- 「開議」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함

⚙ 계류(繫留)

-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

⚙ 발의와 제출

-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함

⚙ 심의와 심사

-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함
- 심의는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함

⚙ 산회(散會)와 유회

-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
- 유회란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연석회의(連席會議)

-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하며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음

⚙ 재의요구(再議要求)

–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함

⚙ 제안설명(취지설명)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취지 설명이라고도 함)

⚙ 축조심사(逐條審査)

–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함

–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음

⚙ 5분 자유발언

–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이내의 발언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까지 의장에게 신청

■ 지방재정 관련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기초단체)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

지방세 비과세·감면

- **비과세** 과세요건에서 제외하여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제외 또는 과세금지라고 함(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감 면**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

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 정률분 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 총액의 97%
  ▶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반 재원으로 교부
- 특별교부세 : 정률분 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 총액의 3%
  ▶ 보통교수에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한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공공복지시설 설치, 국가적 장려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
  ▶ '05년 이후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의 세수감소 보전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교부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신설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지원하기 위해 교부

긴급재정관리제도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발생시 주민서비스 중단·축소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회생 제도

  ※ 민간의 '파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장선에서 추진

■ 기 타

기관위임사무

-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됨

–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기준인건비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규모인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14.3.5. 도입)

– 인구, 재정여건, 하부기관수 등의 기초지표 변동을 반영한 후, 지역현안에 따른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 각각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 정원관리 자율화 차원에서 2018년부터 이를 폐지

※ 단,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 신설(영 제40조제1항)

03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의 주요 행위기준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5조②항〉

⚙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 의정활동 등 보고 제한〈「공직선거법」 제111조②항〉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의정활동 보고

❖ 지방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11조①항)

■ 기부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13~114조〉

조 문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법 §113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주례행위 포함)
법 §114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발 행 일 : 2018. 7.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3861